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5
----------	-----

2011년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6월 13일, 박래학·이강무 의원외 29명
-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 다. 상정결과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6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래학 의원)

가. 제안이유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신고 사항의 처리절차와 보복행위 금지 등을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신설).
- 부조리 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30일 이내 연장 가능), 사실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신고 행위로 신분상, 근무 조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과 심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함(안 제5조).

- 신고자 외에 신고에 관한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자(협조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 피신고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통지와 보복행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조치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3.17. ~ 2011.3.3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 개요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임.

※ 1999.1.15 제정된 서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5.28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지급대상은 분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실명으로 신고된 민원이나 제보사항 중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신분상·재정상·행정상(제도개선)등 조치가 이루어져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경우이며 제도 시행 이래 2010년까지 총 65건 1억 1,255만원이 지급되었음.

※ 보상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외부위원 4, 내부위원 3)에서 보상금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원)

년 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년 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계	65	112,548	-	-	-
2010	4	23,008	2004	4	2,400
2009	11	39,440	2003	6	3,000
2008	11	28,700	2002	5	900
2007	6	6,900	2001	3	300
2006	3	3,400	2000	1	100
2005	4	3,100	1999	7	1,300

▶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이내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액	
		· 1억원이하	- 추정·환수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본질적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2억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2백만원 이내

※ 보상금액 산정방법(예시)

- 추정·환수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추정·환수액의 20%인 2천만원을 지급
- 추정·환수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기본 2천만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14%인 5천6백만원을 합한 7천6백만원을 지급

나. 상위법령과의 관계

-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협조자 보호조치 강화, 신고처리 절차와 보복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 부조리 신고자와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영한 것이라 할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 ㉠ 신고대상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도 신고 할 수 있도록 추가
- ㉡ 신고사항의 처리를 부조리 행위 신고서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30일 이내 연장 가능)
- ㉢ 관계 공무원과 심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 ㉣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자(협조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
- ㉤ 피신고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통지와 보복행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비교표

현행 조례	개정안	법
제3조(지급대상)	제3조(신고대상) 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생략)
<신설>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생략) 1. (생략)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제4조의2(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조례	개정안	법
<p>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부조리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시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6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p>	<p>법</p> <p>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p>

현행 조례	개정안	법
<신설>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조리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6조에 따라 보상금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3(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등의 <u>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u>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지급대상) <u>시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시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등의 <u>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u>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신고대상) ① <u>시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u>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u>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p>② <u>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u></p> <p>제4조의2(신고사항의 처리) ① <u>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부조리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시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6조에 따라 보상금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p> <p>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의3(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협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